

2026년 제1회 고성군의회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고성군의회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고성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담당 예정 업무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40시간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의원발의안 초안 작성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지원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의원의 공청회·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자료 작성 등 지원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 요건

가.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제16조의제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제2호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분 분야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정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연구소(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포함),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법·제도 연구·조사·분석 및 법제, 법률해석 등 근무경력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재정경제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학사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명시가 어려울 경우, 내부공문 및 사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근로약정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4. 보수 수준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단위: 천 원)

임용 예정 직급	상한액	하한액(기본연봉)
일반임기제7급(상당)	70,782	50,272

2. 연봉 외 급여(수당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

5. 시험 방법

1. 서류전형 【1차시험】

- 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4항)

2. 면접시험 【2차시험】

-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

평정 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② 위원 1인당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 ③ 면접 포기 및 불참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정: 퇴직,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6. 시험 일정

1. 시험 명: 2026년 제1회 고성군의회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2. 시험공고: 2026. 5. 15.(금) ~ 2026. 5. 29.(금)
3. 원서접수: 2026. 5. 26.(화) ~ 2026. 5. 29.(금)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예정): 2026. 6. 2.(화)
5. 면접시험일(예정): 2026. 6. 9.(화)
6.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2026. 6. 1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및 개별 유선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 양식 활용
2. 응시원서 접수: 2026. 5. 26.(화) ~ 5. 29.(금)
3. 접수 방법 및 접수처

가. 방문접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등기우편 접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우) 52931】

○ 등기우편 접수(빠른 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 수수료(7,000원)는

고성군 수입증지 첨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 동봉 제출(받을 분 기재금지)

※ 현금, 공채, 타 자치단체 수입증지 등 불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055-670-5755)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7급) 응시원서 재증” 표기할 것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대리접수, 등기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고성군 수입증지 7급 상당(7,000원)
 - 구입장소: 고성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
3.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가. 이력서상의 경력은 관련분야만 기재
 - 나.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인정 불가)
4.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9.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 발급요령: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11.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기재,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12.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반드시 지참 후 확인)

13.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는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에 한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9. 기타(유의)사항

1.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최종시험(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청 시)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6.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7.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8.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055-670-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